## KOSHA GUIDE

C - 49 - 2012

- (마) 추락하여 매달려 흔들리는 경우 물체에 충돌하지 않는 위치에 훅을 설치 하여야 한다.
- (바)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낮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로 우프 길이의 2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구조물 등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. 로우프의 길이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로우프의 길이를 짧게하여 3종, 4종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한다.
- (사) 추락시에 로우프를 지지한 위치에서 신체가 떨어지는 높이보다 접지 바닥 면은 아래에 있어야 한다.
- (3) U자걸이 사용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U자 걸이로 1종, 3종 또는 4종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하며, 후크를 걸고 벗길 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1종, 3종은 보조로우프, 4종은 보조후크 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나) 후크가 확실하게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자가 이동시에는 갑자기 손을 떼지 말고 서서히 체중을 옮겨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손을 떼도록 하여야 한다.
- (다) 전주나 구조물 등에 돌려진 로우프의 위치는 허리에 착용한 벨트의 위치 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- (라) 로우프의 길이는 작업상 필요한 최소한의 길이로 하여야 한다.
- (마) 추락 저지시에 로우프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는 장소에 로우프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4) 클립부착 안전대의 사용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1종 또는 2종 클립부착 안전대는 로우프 끝단의 클립을 합성수지 수직지 지 로우프에 설치해서 사용하여야 한다.